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8 선고 2019가단4771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 (변경전: 주식회사 D)

2. E

변론 종결 2020. 11. 24

판결 선고 2020. 12. 8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,463,632원 및 그 중 61,162,012원에 대하여 2019.10. 7.부터 2019 . 12. 11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는 2018. 11. 21. 피고 회사의 F 주식회사(이하 'F 라 한다)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,보험가입금액 100,000,000원, 보험기간 2018. 11. 21-2019. 11. 20.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약정을 체결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보증보험약정'이라 한다).
나.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G는 2018. 11. 21.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, 이후 대표자가 피고 포로 변경 됨에 따라,2019. 2.경 피고 E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다. F는 2019. 7.경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61,162,012원을 청구하 였고, 원고는 2019. 9. 6. 에 보험금 61,162,012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의하면,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9. 10. 6.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01,620원이고,2019. 10. 7.부터는 기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연 9%의 약 정 지 연손해 금률이 적 용된다.

【인정근거】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】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61, 463, 632원(= 61, 162, 012원 + 301,620원) 및 그 중 61,162,01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. 10. 7.부 터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9. 12. 11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%,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'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'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들은 피고 회사 직원의 횡령, 사기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,F에 대 한 분식회계 비리를 파악하였으므로 구상금등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 런데 피고들 주장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

아니라,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정기